

OK 법조윤리 기출해설

2026년판 1쇄 정오표

(2026년 06월 08일 기준)

※ 본 정오표는 2026년 3월 16일 발행된 “OK 법조윤리 기출해설”
(2026년판) 1쇄에 대한 내용입니다.

OK 법조윤리 기출해설 2026년판 - 정오표

내용 추가 및 오류 수정 (2026년 06월 08일 기준)

2026년 03월 16일 발행된 OK 법조윤리 기출해설(2026년판) 1쇄의 추가(보완) 내용 및 오타자 등을 정리한 정오표를 게재합니다. 수정 및 추가된 부분은 위치란에 표기해 두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정오내용이 발견되는 대로 본 정오표가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26. 4. 29. 변리사 자격 자동취득 변호사에 한해 변리사법 제11조 변리사회 가입 강제가 헌법불합치라고 결정하였다(2020헌바21, 56(병합)). 변리사 자격체계가 비변호사 변리사와 변호사 변리사로 이원화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두 집단을 단일한 변리사회에 일률적으로 편입시키고 그 가입을 강제하는 위 조항은 변호사 변리사의 결사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위 결정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본문 해설에 위 결정에 관한 설명을 추가하고 변리사회 가입 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기출 지문을 일괄적으로 수정함

페이지 [위치]	수정사항	수정 전	수정 후
p. 2 -16회 문 8	[해설 - 수정]	④ 변리사 업무를 시작하려면 특허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변리사법 제5조 제1항). 변리사회 가입 의무도 있다(동법 제11조).	④ 변리사 업무를 시작하려면 특허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변리사법 제5조 제1항). 변리사회 가입 의무에 관한 동법 제11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26. 4. 29.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여 변리사 자격 자동취득 변호사에 대한 변리사회 가입의무는 위헌이라고 판시함
p. 3 -14회 문 25	[지문 - 수정]	② 변호사가 변리사로서 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리사 등록을 하여야 하고, 등록된 변리사는 변리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변호사가 변리사로서 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리사 등록을 하여야 한다.
p. 4 -12회 문 37	[지문 - 수정]	① 변호사가 변리사로서 업무를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리사 등록을 하고 의무적으로 변리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① 변호사가 변리사로서 업무를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리사 등록을 하여야 한다.
p. 6 - 9회 문 27	[지문 - 수정]	② 변호사는 변리사 등록을 하지 않고 특허 등의 업무를 할 수 있으나, 변리사로서 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변리사 등록을 하여야 하고, 등록된 변리사는 변리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변호사는 변리사 등록을 하지 않고 특허 등의 업무를 할 수 있으나, 변리사로서 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변리사 등록을 하여야 한다.

<p>p. 172 - 9회 문 10</p>	<p>[해설 - 수정]</p>	<p>(앞 부분 생략) ①과 ②는 ~ 옳은 지문이 되겠다.</p>	<p>(앞 부분 생략) ①과 ②는 이른바 '변호인-의뢰인 특권'을 해석상 인정한 하급심인 2008노2778 판결을 지문화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 하급심 판결과 달리 현행법상으로는 위 특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2009도6788: 위 판결의 상고심 판결임). 그런데 최근 2026. 1. 29. 위 특권을 도입하는 취지로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을 명문으로 신설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그 이후 대법원은 26. 2. 20.자 결정(2024모730) 및 26. 2. 26.자 판결(2025도4422)로써 변호인-의뢰인 간 의사교환을 내용으로 하는 자료 등에 대한 압수는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대법원이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위 특권이 도출된다고 인정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p>
---------------------------------	------------------	--------------------------------------	---